

현안보고

대외비

사회정책실

부연구위원 장경수

이상동기 범죄와 범죄예방 전자장비 실효성 개선방안

2026년 10월 20일

이상동기 범죄와 범죄예방 전자장비 실효성 개선방안

2026. 10. 20.(화) 사회정책실장 장 경 수

- 최근 인천 구월동 흥기난동 범죄는 재범위험성 '높음' 평가를 받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범행 일주일 전 흥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감독 강화 없이 일으킨 사건
 - 사건 때마다 같은 관리 허점이 반복되는 만큼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장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
- 핵심 문제점 및 개선 방안
 - 전자발찌는 위치 확인에는 작동하나 ▲전담인력 1인당 20명 안팎의 과중한 관리, ▲동적 위험 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적 평가, ▲경찰·보호관찰 간 전화 통보 수준의 정보 단절, ▲구속률 10.3%에 그친 흥기소지죄로 '억제-탐지-개입' 전 단계에 공백이 있으므로, ▲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인력 확충, ▲동적 위험성 평가, ▲기관 간 실시간 공유·공동 대응, ▲치료·복지 연계로 '위험 관리 체계'를 전환해야 함

1. 이상동기 범죄와 범죄예방 전자장비 개선 필요성

□ 인천 흥기난동 범죄: 반복된 경고 신호

- 최근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전자발찌 착용자(59세)가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흥기를 휘두른 사건 발생
 - 피의자는 양손에 흥기를 테이프로 고정한 채 무차별 공격, 피해자는 10명에 달함
- 과거 전처 살해 시도로 징역 4년,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14점 '높음'으로 판정,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음
 - 범행 일주일 전 공공장소 흥기소지 혐의로 입건·조사를 받았으나 감독 강화로 이어지지 않아, '전자발찌'와 '흥기소지죄' 두 안전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못함
 - 피의자는 범행 4시간 전 알코올 상담·보호관찰관 면담·복약검사를 받고,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한 뒤 1시간 후 범행
- 범행 당시에는 위반 사항이 없어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음 → 장치가 설계대로 작동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본질임

[표 1] 인천 구월동 흥기난동 범죄 주요 경과

시점	주요 경과
2015	전처 살해 시도로 징역 4년 선고, 재범위험성 '높음' 평가, 출소 후 10년 부착 명령
2019	전자감독 개시
2021.1~5	외출 제한 4회 위반, 벌금 300만원
2026.8~9	병원 앞 1인 시위 중 8건 신고, 흥기 수거 후 반환
2026.10.4.~10	공공장소 흥기소지 입건, 10.6 조사 및 보호관찰 측 전화 통보, 10.10 흥기 임의제출, 구속 판단 미결
2026.10.13	오전 상담·면담·복약검사 → 13:48경 범행

□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과 공식 관리

- 경찰은 '묻지마 범죄'라는 표현이 동기와 원인을 오해하게 한다는 이유로 2022년 1월부터 '이상동기 범죄'로 명칭을 정하고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
-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서 피해 예측이 어렵고, 발생 이후 대응보다 '위험인물 사전 관리'가 예방의 핵심

□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는 '처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'이 아니라 '반복 위험군'

- KICJ(2024.12 「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」) 분석 결과, 2019~2024년 1심 선고 244건 중 가해자의 80.3%(196명)가 전과가 있었고, 전과 16건 이상이 21.7%(53명), 이상동기 범죄 전력자가 43.9%(107명)였음
 - 유형별로는 만성분노형 63.1%, 정신질환형 27.0%, 현실불만형 9.8% → 가해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개입(통제·치료·복지)이 다름
- 따라서 '전과자 사후관리'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의 핵심 정책 수단이며, 전자감독은 그 중심 제도임

□ 전자장비의 작동 실패는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

- 최근 송파구 장모 살해·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범행 예방에 실패 → 가해자 감독 장비(전자발찌)와 피해자 보호 장비(스마트워치) 모두 점검 필요
 - ※ 2022.1~2026.8 동안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이 106건에 달함
- 이에 본 보고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장비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, 핵심 문제점을 진단하고,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2. 범죄예방 전자장비는 과연 실효성 있는가?

□ 평가 기준: 전자발찌는 '위치 확인 장치'이므로 3단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함

- ① 억제: 위반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을 주는가(제재의 실효성)
- ② 탐지: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가(위치 + 행동·정신 상태 정보)
- ③ 개입: 포착한 징후가 현장 조치로 이어지는가(기관 간 공조·강제력)

① 억제 - 부분적 작동, 제재는 약함

- 도입 이후 성폭력 동종 재범이 줄었다는 연구(제도 시행 후 4년간 동종 재범률이 시행 전의 1/6 수준)가 있으나, 다만 오래된 연구여서 최신 성과로 단정하기 어려움
 - 최근 4년간(2022.1~2026.8) 외출제한 위반 4,552건,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41건, 전자장치 훼손 31건이 집계
- 외출제한 위반의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실제로는 100만~300만원 벌금이 대부분 → 법정형과 실제 처벌 간 괴리가 억제력 약화

② 탐지 - 작동하지 않음

- 인천 흥기난동 사건은 '준수사항 위반 없는 고위험 범행'으로, 위치 정보 중심 설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줌
 - 전문가 의견: 전자장치로 접근금지·외출제한 준수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집을 나설 때 흥기를 소지했는지는 알 수 없고, 면담에서 의도를 숨기면 대면 관리로도 파악하기 어려움
- 탐지에 필요한 정보(1인 시위 중 흥기 소지, 8건의 신고, 병원 갈등)는 존재했으나 위험 평가에 통합되지 않음

③ 개입 - 가장 취약

- 경찰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확인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나, 사안에 따라 통보가 지연되는 등 실시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음
- 통보가 이루어져도 '감독 강화·신병 확보'로 이어지는 절차가 없음

⇒ 평가: 결국 전자발찌는 '위반 행위'에는 작동하나 '위험 징후'에는 작동하지 않는 장치임. 따라서 범죄예방 전자장비 자체에 대한 무용론/폐지론보다는 '위험 평가·개입 체계의 부재'에 집중할 필요

3. 범죄예방 전자장비 운용의 실질적 문제점

① 제재의 실효성 약화

- 외출제한 위반이 전체 준수사항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
 - 2026.1~7 준수사항 위반 599건 중 590건(98.5%)이 외출제한 위반
-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반복은 고위험군에게 '위반 비용이 낮다'는 신호가 될 수 있음
 - 위반 이력은 위험성 재평가와 감독 수준 상향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어야 함

② 전담인력 부족: 대상자 증가 vs 전담인력 부족

-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,316명 → 2026년 8월 5,301명으로 증가, 같은 기간 보호관찰관은 255명 → 234명으로 오히려 감소
 - 법무부 내부 권고 기준은 1인당 10명 이내이나, 2025년 20.7명으로 두 배 이상
 - 보호관찰관 1인당 대상자는 룩셈부르크 2명, 덴마크 4명, 미국 텍사스주 7명 등으로 한국이 현저히 높음
- 법무부가 1인당 12명 수준을 목표로 157명 증원 방안을 마련했으나 현장 부담은 여전

③ 위험 판단의 개인 의존, 사후적·정적 평가

- 재범 위험 징후 판단이 담당 보호관찰관 개인에 의존하고 있음
- 재범위험성 평가(14점 '높음')는 선고·출소 시점의 정적 평가로, 이후의 흥기 소지·신고·민원 같은 동적 위험 신호를 반영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음
 - 이번 인천 사건에서도 최근 행위가 위험 판단과 감독·치료 조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음

④ 경찰-보호관찰 정보 단절

- 경찰이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전화로 통보했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은, 통보가 '정보 전달'에 그치고 '공동 대응 절차'가 없는 구조를 보여줌
 - 경찰은 현장 출동 당시 수거한 식칼을 시위 종료 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됨
 - 경찰이 2026.1부터 흥기소지 입건자의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으나 이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음

⑤ 공공장소 흥기소지죄 실효성 부족

- 신설 취지: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흥기휴대죄보다 처벌이 높아지고, 주거가 일정해도 현행범 체포·긴급체포·압수가 가능해짐
 - 그러나 2025.4.8.~2026.8.31 동안 검거 1,164명 중 구속은 120명(10.3%)에 그침
- 2026.1~8 검거 567명 중 324명이 전과자(57.1%) → 전과자·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별도 판단 기준(구속·잠정조치)이 없는 것이 문제

[표 2] 범죄예방 전자장비 운용 및 결과

구분	제도 취지	운용 실태	결과
전자감독	고위험 범죄자 지도·감독	1인당 20명 안팎 (권고 10명)	위험 징후 판단이 개인에 의존
흥기소지죄	이상동기 범죄 예방	구속률 10.3%	입건 후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
기관 공조	경찰·보호관찰 협력	전화 통보 수준	위험성 평가 대상에서 누락

4.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

□ 정책 과제

① [억제] 위반 제재의 현실화

- 외출제한 등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감독 수준 자동 상향(위반 이력 → 재평가), 상습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 정비
- 실제 선고 통계 확보 후 법정형 대비 처벌 괴리 점검

② [탐지] 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동적 위험성 평가

- 재범위험성 '높음' 등급·강력범 전력자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, 1인당 권고 기준(10명) 준수 로드맵과 예산 공개 요구
- 복약·상담·음주·민원·신고·흥기 소지 입건 등을 통합한 정기 재평가 체계 마련
- AI 등을 활용한 위험 경고체계로 보호관찰관 판단을 보완하자는 제안이 있으나, 생체정보 활용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병행 검토

③ [개입] 경찰·보호관찰 실시간 공유 및 공동 대응

- 대상자의 흥기 소지·신고·입건 시 자동 통보 + 합동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(통보 지연 방지)
- 흥기 압수 후 반환 기준 정비,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잠정조치·구속 판단 기준 마련

④ [연계] 치료·복지 연계 강화

- 정신질환형·만성분노형 대상자의 치료 이행 점검, 지역사회 상담·복지 연계, 필요 시 치료

위탁 제도 검토

⑤ [피해자 보호] 스마트워치 등 보호장비 작동 점검

- 송파·제주 사례의 작동 실패 원인 규명과 감독 체계 보완 요구

□ 해외사례 시사점

- (미국) RF는 중·저위험군에, GPS는 성범죄자·가정폭력 가해자 등 고위험군에 활용하는 등 위험도별로 차등 적용
- (영국) GPS와 범죄 지도를 연계해 보호관찰관이 즉각 개입하는 시스템과 음주 감지 기술 도입
- 시사점: 장치의 확대보다 '위험도별 차등 관리'와 '기술을 통한 인력 보완'이 핵심